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8.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 방지 및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1.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 명확화 (안 제4조의2)

‘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

2.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 (안 제5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06.10.4.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어 ‘07.4.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감면규정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함

3.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정비 (안 제7조제1항~2항)

「문화재보호법」이 ‘07.4.11.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으로 함

4.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농어민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규정 신설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안 제11조)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정비

6.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 명확화 (안 제13조)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

3. 개정근거

- 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법률 제8835호, 2007.12.31]
- 나.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47조 [법률 제8346호, 2007. 4.11]
- 다.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 서울특별시 세제과-13308(2007.10.10)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8.01.10 ~ 01.3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8.2.14)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 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6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제1항제1호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11조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9조 및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p><u>제4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p><u>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5. (생략)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p><u>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u></p> <p>-----</p>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5. (현행과 같음)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현 행	개 정 안
<p><u>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u></p> <p>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및 3.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u>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u></p> <p>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p> <p>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 -----</p> <p>2. 및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 ----- -----</p>
<p><u><신설></u></p>	<p>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p> <p>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p>

